

고령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28

○ 제출연월일 : 2023. 9. 5.

○ 제출자 : 유희순 의원 외 6명

○ 의결연월일 : 2023. 9. 11.

○ 의결내용

유희순 의원 외 6명이 제출한 「고령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91회 고령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 붙임 : 「고령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의회



고령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한다.

고령군의회 의장
2023년 9월 11일



고령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
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민간부분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3.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 연계
4. 방문간호서비스
5.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상담
6. 주민 모임 참여 등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의회사무과	
연 락 처	054-950-6407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29
----------	------

○ 제출연월일 : 2023. 9. 5.

○ 제출자 : 성원환 의원 외 6명

○ 의결연월일 : 2023. 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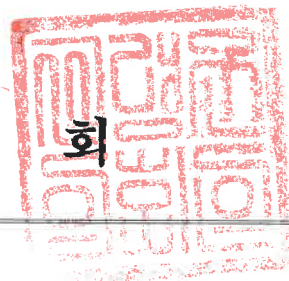
○ 의결내용

성원환 의원 외 6명이 제출한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291회 고령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 붙임 : 「고령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의회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한다.

고령군의회 의장
2023년 9월 11일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전문위원을”을 “전문위원(5급을 “수석전문위원”, 6급을 “전문위원”이라 한다)을”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의회사무과	
연 락 처	054-950-6407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안 번호	2030
----------	------

- 제출연월일 : 2023. 9. 5.
- 제출자 : 성원환 의원 외 6명
- 의결연월일 : 2023. 9. 11.
- 의결내용
성원환 의원 외 6명이 제출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에 대하여
제291회 고령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 붙임 :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고령군의회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한다.

고령군의회 의장
2023년 9월 11일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고령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고령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28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로 한다.

제86조를 삭제한다.

기무회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의회사무과	
연 락 처	054-950-6407



고령군의회위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3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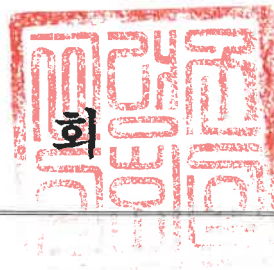
- 제출연월일 : 2023. 9. 5.
- 제출자 : 김기창 의원 외 6명
- 의결연월일 : 2023. 9. 11.

○ 의결내용

김기창 의원 외 6명이 제출한 「고령군의회위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291회 고령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 붙임 : 「고령군의회위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의회



고령군의회위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한다.

고령군의회 의장
2023년 9월 11일



고령군의회위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의회위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고령군의회위원의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제8조”를 “「고령군의회위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8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의회사무과	
연 락 처	 054-950-6407 

고령군의회위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32
----------	------

○ 제출연월일 : 2023. 9. 5.

○ 제출자 : 김기창 의원 외 6명

○ 의결연월일 : 2023. 9.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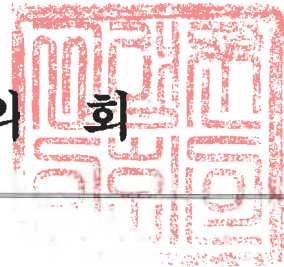
○ 의결내용

김기창 의원 외 6명이 제출한 「고령군의회위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291회 고령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 붙임 : 「고령군의회위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의회



고령군의회위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한다.

고령군의회 의장
2023년 9월 11일



고령군의회위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의회위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조”를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정활동비를”을 각각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의회사무과	
연 락 처	054-950-6407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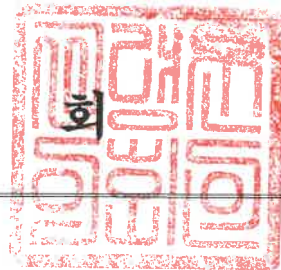
의안 번호	2033
----------	------

- 제출연월일 : 2023. 9. 5.
- 제출자 : 성낙철 의원 외 5명
- 의결연월일 : 2023. 9. 11.
- 의결내용

성낙철 의원 외 6명이 제출한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291회 고령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 붙임 :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령군의회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한다.

고령군의회 의장
2023년 9월 11일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발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발전시설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제20조의3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 관련 업종 및 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른 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자연취락지구 및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7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으로부터 7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의 저수지, 「하천법」 제2조제1호의 하천,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전통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허가 받은 부지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단, 농공단지 제외)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건축법 등 관련법령”을 “건축법”으로, “경우에는”을 “경우(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관련 시설 건축물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이상 사용한 경우로 한정)에는”으로, “허가한다”를 “허가한다.(단, 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은 지붕면적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고 경지가 정리된 진흥구역내의 집단화된 농지

⑤ 고품연료제품 사용 발전시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0조의3 제3항의 입지허가 기준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또는 허가받은 시설(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신청 사항 포함)은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의회사무과	
연 락 처	054-950-6407

고령군 장기공단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의안 번호	2034
----------	------

○ 제출연월일 : 2023. 9. 5.

○ 제출자 : 성원환 의원 외 5명

○ 의결연월일 : 2023. 9. 11.

○ 의결내용

성원환 의원 외 5명이 제출한 「고령군 장기공단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291회 고령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 붙임 : 「고령군 장기공단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

고령군의회



고령군 장기공단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을 의결한다.

고령군의회 의장
2023년 9월 11일



고령군 장기공단 폐기물 재활용 시설(폐유) 설치 반대 결의안 (성원환 의원 대표발의)

1. 제안 이유

- (주)민심산업이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공단 1길 66 일원에 지정폐기물재활용업(폐유)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대가야읍은 고령군 전체 인구의 30%가량이 거주하는 지역이며 장기공단은 대가야읍 주거밀집지역 지근거리에 위치한 공단으로서 폐유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종이 입주할 시 폐유로 인한 대기중 화학물질 등 대가야읍 주민들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
- 폐유 등 침출수로 인한 회천변 오염과 농지훼손, 나아가 낙동강 수질오염은 물론이고, 유해한 폐유에 의한 각종 질병 노출, 빈번한 폐유 운반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악취 등 주민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

- 또한, 사업대상지 일대는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를 앞둔 지산동고분군과는 직선거리로 약 1.5km 떨어진 위치로서 향후 세계유산등재 이후에도 관광객 유치 및 고령군의 청정 문화관광도시 이미지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함.
- 이에, 고령군민(대가야읍 주민)의 기본권, 환경권 등을 보호하고 고령군의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긍정적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해 폐유를 처리하는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 반대를 촉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주)민심산업의 지정폐기물 재활용시설(폐유)사업 추진 철회요청
- 고령군이 지정폐기물 재활용사업 허가권을 가진 대구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대응 필요

3. 건 의 문 : 붙임

4. 수 신 처 : 대구지방환경청장, 전국지방의회장, 고령군수
(주)민심산업

고령군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고령군 장기공단 폐기물 재활용 시설(폐유)
설치 반대 결의안**

주식회사 민심산업은 고령군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사업계획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민심산업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은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공단1길 66 일원에 폐유를 처리하는 지정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이다.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장기공단은 고령군 전체인구의 약 30%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밀집지역 인근으로서 폐기물 재활용 시설 업종이 입주할 시 폐유 등 침출수로 인한 수질오염 및 농지훼손, 폐유로 인한 대기오염 및 화학물질에 노출, 빈번한 폐유 운반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악취 등 대가야읍 주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사업대상지 일대는 2023년 9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둔 현시점에서 지산동 고분군과 인접한 위치로서 향후 세계유산등재 이후에도 관광객 유치 및 고령군의 청정문화관광도시 이미지 형성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고령군의회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폐기물재활용시설로부터 고령군민의 기본권과 생활권을 지키고, 나아가 고령군의 청정문화관광도시 이미지제고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고령군의회는 민심산업의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치사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한다.


하나, 주식회사 민심산업은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으로 인한 고령군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고령군은 대구지방환경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폐기물 재활용시설설치 반대에 적극 대응하라.

2023년 9월 11일

고령군의회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령군 의회사무과	
연 락 처	 054-950-6407